

# 서울특별시 마포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	--

제출년월일 : 2009. 11.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 1. 개정이유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구민·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한도,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등 조례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포상금 지급기준 개선(안 제3조)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의 추징에 관하여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경우의 포상금 지급기준 등을 내용으로 안 제3조제6호를 신설

#### 나. 포상금 지급한도 입법 미비규정 보완(안 제3조의2)

##### 1) 제1항(일부개정) : 포상금 한도규정 추가

점용료·사용료·과태료를 부과하게 한 경우(제3조제3호)

- 지급한도 : 부과기준 건당 30만원, 개인별 월 100만원

##### 2) 제2항(신설)

「조세범처벌법」 등에 따른 통고처분·고발, 탈세정보 제공 등으로 지방세를 징수하게 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한도 규정 신설(1천만원)

다.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목적 명확화(안 제4조)

    미수액징수 심의 ⇒ 세정발전과 세입증대 심의로 변경

라. 포상금 지급시점 보완(안 제7조 제2항 및 단서 신설)

    부과 또는 징수액에 행정쟁송 등 다툼이 있는 경우에 그 쟁송이 종결되어 채권이 적법한 것으로 확정된 이후에 지급하도록 변경

### **3. 개정근거**

자치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개정추진계획 시달(서울특별시 세무과-6740,2009.4.17)

### **4. 조례안 : 따로붙임**

### **5.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 **6. 기타사항**

가. 입법예고 : 2009. 10. 15. ~ 11. 04. (제출된 의견 없음)

나.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의결(2009. 11. 5)

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라. 신 · 구조문 대비표 1부

## 서울특별시 마포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본문 중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 중 “미수액”을 “체납액”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제1항제1호”로, “미수액”을 “체납액”으로 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공적”이란 서울특별시 마포구 세입금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 · 관허사업제한 ·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고발 또는 그 밖의 관련법령에 따라 강제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로서 제4조에 따른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에서 특별공적으로 인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본문 중 “각호”를 “각 호”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과년도 미수액중 1년차분”을 “전년도 체납액 중 1년차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과년도 미수액중”를

“전년도 체납액 중”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점용료 또는 사용료 및 과태료”를 “점용료나 사용료 또는 과태료”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제2조 제1항 제3호”를 “제2조제1항제3호”로, “공무원 제안규정 등에 의하여”를 “「공무원제안규정」 등에 따라”로, “조례에 의한”을 “조례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을 “고의 또는 과실로”로, “환급 받는자”를 “환급받은 자”로, “조세범처벌법 및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거 통고처분하거나 고발하고 그 세원을 추징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를 “「조세범처벌법」 및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라 통고처분하거나 고발하고 해당 지방세를 추징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이하 “탈루세액등”이라 한다)의 추징에 관하여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이 경우 “중요한 자료”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제2항에 따른 자료에 준하는 자료를 말한다.

가. 「조세범처벌법」 및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라 통고처분하거나 고발하고 해당 지방세를 추징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나. 가목 외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한 경우, 국세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세에 대하여 자료를 제공한 경우, 제공된 자료에 따른 탈루세액등이 신고 건당 1천만원 미만이거나 그 자료에 대한 사실검증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1) 탈루세액등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 징수액의 100분의 5
- (2) 탈루세액등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250만원+5천만원 초과 징수액의 100분의 3

(3) 탈루세액등이 1억원 초과 : 400만원+1억원 초과징수액의 100분의 2

제3조의2를 제1항으로 하여 같은 조 제1항(종전의 같은 조)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부과기준에 따라 1건당 30만원(공무원 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월지급액 100만원

② 제3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포상금은 1천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미수액징수”을 “세정발전과 세입증대”로, “서울특별시 마포구○○국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를 “서울특별시 마포구 ○○ 국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인을 포함한 위원 4인 내지 6인으로”를 “1명을 포함하여 위원 4명 이상 6명 이하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본문 중 “각호”을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포상금지급대상자”를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포상금지급”을 “포상금 지급”으로 한다.

1. 제2조에 따른 지급대상에 관련된 사항
2. 제3조에 따른 지급기준에 관련된 사항
3. 제3조의2에 따른 지급한도에 관련된 사항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대장비치) 세입금부과징수부서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전년도 체납액 징수대장(포상금지급대상)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숨은 세원 발굴 과징대장(포상금지급대상)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 중 “제3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3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신청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

제7조제1항 중 “제6조제1항에 의하여”를 “제6조제1항에 따라”로, “당해연도”를 “해당 연도”로, “년도”를 “연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제4항의 규정에 의하되”를 “제4항을 따르되”로, “방법에 의하여”를 “방법에 따라”로 한다.

②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 징수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에 지급한다. 다만, 제3조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지방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불복 청구기간 또는 제소기간이 경과되었거나 불복청구철자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제8조제1항 중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을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행정착오에 의하여”를 “행정착오에 따라”로, “이를”을 “지급한 포상금을”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

라”로, “기간동안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한”을 “기간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른”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의 개정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에 접수되는 포상금 지급 신청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포상금 지급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위원회의 포상금 지급 심의대상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 중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하고, 별표의 제1호 나목란 중 “(2) 지방세 납세증명”을 삭제한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p><b>제2조(지급대상)</b>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p> <p>1. <u>미수액</u>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기능직·별정직 및 고용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p> <p>2. ~ 3. (생략)</p> <p>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적이라 함은 서울특별시마포구세입금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관허사업제한·「조세범처벌법」에 의한 고발 기타 관련법령에 의하여 강제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미수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미수액 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미수납액징수는 특별공적에 포함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에서 특별공적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p> <p>③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장급이상 관리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u>미수액</u>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b>제2조(지급대상)</b>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p> <p>1. <u>체납액</u>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기능직·별정직 및 고용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p> <p>2. ~ 3. (현행과 같음)</p> <p>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공적”이란 서울특별시 마포구 세입금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관허사업제한·「조세범처벌법」에 따른 고발 또는 그 밖의 관련법령에 따라 강제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로써 제4조에 따른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에서 특별공적으로 인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p> <p>③ 제1항제1호에 불구하고 국장급이상 관리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u>체납액</u>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제3조(지급기준)**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과년도 미수액 중 1년차분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2. 과년도 미수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으로 하고, 3년차의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3. 도로·하천·공유수면 및 국공유지의 무단점용이나 부정급수 또는 지하수·하천수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요금의 징수를 면한 자를 발견하여 점용료 또는 사용료 및 과태료를 부과하게 한 경우에는 그 부과액의 100분의 5
4. 제2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다만, 공무원 제안규정 등에 의하여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5.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지방세를 부당하게 포탈, 공제 또는 환급받는 자를 적발하여 조세법 처벌법 및 조세법처벌절차법에 의거 통고처분하거나 고발하고 그 세원을 추징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신 설〉

**제3조(지급기준)**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전년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2. 전년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으로 하고, 3년차의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3. 도로·하천·공유수면 및 국공유지의 무단점용이나 부정급수 또는 지하수·하천수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요금의 징수를 면한 자를 발견하여 점용료나 사용료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한 경우에는 그 부과액의 100분의 5
4.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다만, 「공무원제안규정」 등에 따라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5. 고의 또는 과실로 지방세를 부당하게 포탈, 공제 또는 환급받은 자를 적발하여 「조세법처벌법」 및 「조세법처벌절차법」에 따라 통고처분하거나 고발하고 해당 지방세를 추징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6.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

받은 세액(이하 “탈루세액등”이라 한다)의 추징에 관하여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이 경우 “중요한 자료”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제2항에 따른 자료에 준하는 자료를 말한다.

가. 「조세범처벌법」 및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라 통고처분하거나 고발하고 해당 지방세를 추징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나. 가목 외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한 경우, 국세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세에 대하여 자료를 제공한 경우, 제공된 자료에 따른 탈루세액등이 신고 전당 1천만원 미만이거나 그 자료에 대한 사실검증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탈루세액등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 징수액의 100분의 5

(2) 탈루세액등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250만원+5천만원 초과징수액의 100분의 3

(3) 탈루세액등이 1억원 초과 : 400만원+1억원 초과징수액의 100분의 2

<p><u>제3조의2(지급한도)</u>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p> <p>1. 부과기준에 의한 미수금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p> <p>2. 개인별 월지급액 100만원</p> <p style="text-align: center;"><u>&lt;신 설&gt;</u></p>	<p><u>제3조의2(지급한도)</u> ①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p> <p>1. 부과기준에 따라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p> <p>2. 개인별 월지급액 100만원</p> <p>② 제3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포상금은 1천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한다.</p>
<p><u>제4조(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등)</u> ① 미수액징수 공적심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소속하에 각 국별로 서울특별시마포구○○국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4인 내지 6인으로 구성한다.</p> <p>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관국장이 되고 위원은 과장급으로 한다.</p> <p>④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p>1.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범위</p> <p>2.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p> <p>3.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급한도</p> <p>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p>	<p><u>제4조(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등)</u> ① 세정발전과 세입증대 공적심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소속하에 각 국별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위원 4명 이상 6명 이하로 구성한다.</p> <p>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관국장이 되고 위원은 과장급으로 한다.</p> <p>④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p>1. 제2조에 따른 지급대상에 관련된 사항</p> <p>2. 제3조에 따른 지급기준에 관련된 사항</p> <p>3. 제3조의2에 따른 지급한도에 관련된 사항</p> <p>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p>

<p>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u>포상금지급대상자</u>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p> <p>⑥ <u>포상금지급</u>은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p> <p><b>제5조(대장비치)</b> 세입금과징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과년도 미수액 징수대장(<u>포상금지급대상</u>)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숨은 세원발굴과징대장(<u>포상금지급대상</u>)으로 한다.</p> <p><b>제6조(지급신청)</b> ① <u>제3조 각호의 규정</u>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의 심사결정서를 붙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지급 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p> <p><b>제7조(지급)</b> ① 구청장은 <u>제6조제1항에 의하여</u>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u>당해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u> 지급할 수 있다.</p> <p>② 제3조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당해 징수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에 지급한다.</p>	<p>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u>포상금지급대상자</u>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p> <p>⑥ <u>포상금 지급</u>은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p> <p><b>제5조(대장비치)</b> 세입금부과징수부서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전년도 체납액 징수대장(<u>포상금지급대상</u>)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숨은 세원발굴 과징대장(<u>포상금지급대상</u>)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p> <p><b>제6조(지급신청)</b> ① 제3조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의 심사결정서를 붙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신청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p> <p><b>제7조(지급)</b> ① 구청장은 <u>제6조제1항에 따라</u>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u>해당 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u> 지급할 수 있다.</p> <p>②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 징수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에 지급한다. 다만, 제3조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지방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불복청구기간 또는 제소기간</p>
--	--

	<p><u>이 경과되었거나 불복청구절차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u></p> <p>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0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되,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입금시키는 방법에 의하여 지급한다.</p> <p><b>제8조(환수)</b> ①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p> <p>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u>당해</u>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에는 이체입금시키는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p> <p>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u>기간동안</u>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p> <p><u>이 경과되었거나 불복청구절차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u></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포상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0조제3항 및 제4항을 따르되,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입금시키는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p> <p><b>제8조(환수)</b> ①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p> <p>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u>해당</u>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따라 환급된 경우에는 <u>지급한 포상금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u></p> <p>③ 제1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u>기간에는</u>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p>
--	--